

< 음주운전 관련 법률 개정사항 >

▶ 개정 도로교통법('19. 6. 25. 시행)

-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: 0.05% → 0.03%
-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

구분	현행	개정안
0.03~0.05%	<신 설>	(0.03~0.08%)
0.05~0.1%	징역 6개월 이하, 벌금 300만원 이하	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
0.1~0.2%	징역 6개월~1년, 벌금 300만원~500만원	(0.08~0.2%) 징역 1년~2년, 벌금 500만원~1천만원
0.2% 이상	징역 1년~3년, 500만원~1천만원	징역 2년~5년, 벌금 1천만원~2천만원
2회	<신 설>	(2회 이상)
3회 이상	징역 1년~3년, 벌금 500만원~1천만원	징역 2년~5년, 벌금 1천만원~2천만원
측정불응	징역 1년~3년, 벌금 500만원~1천만원	징역 1년~5년, 벌금 500만원~2천만원

▶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('18. 12. 18. 시행)

- 위험운전(음주운전)치사상죄 처벌 강화

내용	처벌수준	
	기존	현행
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)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	10년 ↓ 징역, 5백만원~3천만원 벌금	1년~15년 징역, 1천만원~3천만원 벌금
위 사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	1년 ↑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	3년 ↑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